

법무성은 당분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해 출입국 관리 및 난민 인정법 제 5 조 제 1 항 제 14 호에 해당하는 외국인으로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상륙을 거부하기로 했습니다.

○상륙 신청일 전 14 일 이내에 다음 지역에 체재한 이력이 있는 외국인

- 아이슬란드 공화국, 아일랜드, 안도라 공국, 이탈리아 공화국, 이란 이슬람 공화국, 에스토니아 공화국, 오스트리아 공화국, 네덜란드 왕국, 산마리노 공화국, 스위스 연방, 스웨덴 왕국, 스페인 왕국, 슬로베니아 공화국, 덴마크 왕국, 독일 연방 공화국, 노르웨이 왕국, 바티칸 시국, 프랑스 공화국, 벨기에 왕국, 포르투갈 공화국, 몰타 공화국, 모나코 공국, 리히텐슈타인 공국, 룩셈부르크 대공국: 모든 지역
- 중화인민공화국:후베이성(湖北省), 저장성(浙江省)
- 대한민국:대구광역시, 경상북도의 청도군, 경산시, 안동시, 영천시, 칠곡군,

의성군, 성주군, 군위군

○중화인민공화국 후베이성(湖北省) 또는 저장성(浙江省) 발행의 중국 여권을 소지한 외국인

○홍콩에서 출항한 선박 웨스테르담(Westerdam) 호에 승선하고 있던 외국인